

#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40호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PAC 사회공헌단 출범



2012. **2**

# CONTENTS 2012년. 2월. 제140호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PAC 사회공헌단 출범

04 **내 마음의 서재**  
시, 채근담, 카잔차키스

06 **위원단상**  
금슬 좋은 우리 옆집 부부

07 **기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을까?

08 **언론분쟁 경험기**  
입장 바뀐 김기자

09 **이달의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10 **판례토크**  
'대머리'는 나쁜 것이 아니다

11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2011년도 조정중재 처리현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PAC 사회공헌단 출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6일 프레스센터 서울사무처에서 PAC 사회공헌단(단장 권성 위원장)을 결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그동안 위원회는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내 봉사동호회인 '코이노니아'를 지원하고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데 적극 노력해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그늘진 곳에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사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사회공헌단 출범을 계기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활동, 재난발생 시 구조활동, 환경정화운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전개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 PAC 사회공헌단 다짐

언론중재위원회 임직원은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 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사회적 구조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임직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모아 참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언론중재위원회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 시, 채근담, 카잔차키스



## 고종주 변호사

現 법무법인 정인 소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중재부 중재부장 (2007. 3 ~ 2011. 3)

저서  
〈재판의 법리와 현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우리 것이 아닌 사랑〉

책만 책이겠는가. 자연도 책이고 사람도 책이다. 사권 순서로 보면 아무래도 자연과 사람이 먼저이겠지만 책안에 자연과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왜 아니겠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두 눈 가득 바다가 들어오는 외진 섬마을,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나 같은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어려서는 책보다는 자연을, 그리고 사람을 즐겨 읽었다. 주변에 책이 없기도 했거니와 내 앞에 끝없이 펼쳐진 자연의 품이 너무나도 강한 힘으로 나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사람들과 더불어 계절에 따라 자연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말과 글을 듣고 읽었다. 그 시절의 비와 바람, 햇빛과 눈보라, 풀과 나무, 소와 토끼, 하늘을 나는 새와 잠자리, 나비와 꽃은 모두 모국어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로부터 하나하나 우리말을 배워갔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소월과 영랑, 그리고 운동주의 시를 만났을 때 나는 책이 또 하나의 다른 자연임을 확인했다. 내가 자연에서 배운 언어들이 책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고, 그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시를 읽으면 그 소리는 곧 파도와 바람이 되고 비와 새소리가 되었다. 나는 일찌감치 우리의 모국어가 자연의 호흡과 자연의 노래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음을 알고 감격스러웠다.

시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베껴 쓰면서 시는 곧 사람의 숨결이며 이것을 가락으로 우리의 일상 언어가 노래가 되는 과정을 눈여겨보았다. 그렇게 나는 모국어에 서서히 매혹되어 갔다.

## 현암사에서 나온 동양의 명저 중 한 권인 채근담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들도 없는 벗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대학입시 준비 대신 농사짓는 법을 배웠다. 농고생이었던 나는 한 손에는 책을, 다른 한 손에는 벼 포기를 움켜쥐고서 3년의 세월을 보냈다. 허송한 날들이었던가. 아니다. 그 때문에 나는 더욱 자연과 그 속의 아이들에게 몰입하였다. 그 무렵 우연히 보물하나가 내 품에 들어왔다. 현암사에서 나온 동양의 명저 중 한 권인 채근담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들도 없는 벗이 되었다. 이런 인연을 은총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책을 펼치자마자 시인 조지훈이 번역한 그 아름다운 문장들은 나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바람이 성긴 대 숲에 오매 바람이 지나가면 대가 소리를 지니지 않고 기러기가 차운 못을 지나매 기러기가 가고 난 다음에 못이 그림자를 머무르지 않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

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나니라.” 우리의 모국어가 운반하는 이 도저한 동양의 정신, 동양의 지혜, 동양의 자연이라니. “그렇구나. 굳이 시가 아니라도 우리말은 이리도 맛깔스럽게, 때로는 낭창낭창, 때로는 도도하게, 때로는 가슴 저미도록, 때로는 유쾌하게, 마치 강물이 들판을 흐르듯, 바람이 산맥을 넘듯, 파도가 해변에서 튀어 오르듯,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휘잡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힘과 멋을 가진 언어로구나” 석양을 등지고 저문 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항용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었다.

*서른을 갓 넘긴 내게 엄청난 위력을 지닌 크나큰 태풍 하나가 또다시 나를 휘몰아쳤다. 그리스 출신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의 등장이다.*

서른을 갓 넘긴 내게 엄청난 위력을 지닌 크나큰 태풍 하나가 또다시 나를 휘몰아쳤다. 그리스 출신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의 등장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 조국의 역사와 사랑, 신과의 투쟁에 대한 불멸의 기록을 남긴 그가 없었다면, 지중해 연안의 기후와 풍속,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말하고 생각하는 방법 등을 아가자기하고 실감나게 묘사할 뿐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비롯한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를 글로써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마치 그림인 듯 음악인 듯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가 없었다면, 확산하던,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중심단어로 삼는 내 삶에 대한 재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만큼 내 사유와 글쓰기도 더 빈약했을 것이다. 1981년 고려원에서 시작한 전집 출간 작업은 2008년 출판사 열린책들이 30권으로 완간을 함으로써 내가 테라로사의 장미라고 명명한 카잔차키스, 그로 인한 나의 행복은 배가되었다. 더욱이 첫 번역으로 나온 영국 기행, 스페인기행, 러시아기행 등이 보여주는, 그가 읽고 해석한 사물에 대한 다채롭고 신비로운 서술과 묘사는 나를 언어 예술의 몽환에 잠기게 하였다.

내 마음의 서재는 매혹적인 무중력의 공간이다. 그곳에는 책이 있고,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다. 나는 이들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책은 나에게 길이었고, 사랑이었고, 삶이었다. 앞으

로도 그럴 것이다. 책은 내게 일을 주었고, 사람을 보내주었으며, 자연을 내 곁으로 불러주었다. 무엇보다 책은 친구가 적은 내게 수많은 스승과 말벗을 만나게 해 주었다. 영혼의 양식이기 이전에 책은 나의 몸이고 나의 역사이다.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쓰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채근담**

중국 명말(明末)의 환초도인(還初道人) 홍자성(洪自誠)의 어록(語錄)으로, 인생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 채근이란 나무 잎사귀나 뿌리처럼 변변치 않은 음식을 말한다.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교훈을 주는 가르침으로 꾸며져 있다.

**카잔차키스 (1883 ~ 1957)**

그리스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이다. 여러 나라를 편력하면서 역사상 위인을 주제로 한 비극을 많이 썼다. 그리스 난민의 고통을 묘사한 <다시 십자가에 못박히는 그리스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대표작으로 <그리스인 조르바>, <오디세이아>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박 경 숙 위원  
제주중재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금슬 좋은 우리 옆집 부부



비행기 내 옆좌석에 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살짝 얼굴을 보니 그녀의 얼굴은 매우 젊어 보였다. 20대로 보였다. 창 쪽에는 서너살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혼자 놀고 있었다. 두 아이들은 우윳빛 혈색에 불그스름한 볼하며 매우 건강해 보였다. “싱싱한 젊은 엄마!”, 왠지 흐뭇해졌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주욱 뻗어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그림은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20대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이 점점 연기 되고 유보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의 의뢰로 한국인구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30~34세의 기혼남성이 처음으로 미혼남성보다 적어졌다. 10명 중 미혼인 경우가 5명을 넘는 것이다. ‘30대 노총각’은 옛말이 되었다. 30~34세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31.8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28.9세로 20년 전인 1990년에 비해 약 4년 정도 늦어졌다. 이제 ‘청춘남녀’의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 같다.

1970년 한국의 출산율은 4.53명이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던 그 시대가 먼 옛날은 아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1990년에 1.59명, 2000년에 1.47명으로 급격히 하강하여 현재는 1.15명이다. OECD 평균인

1.71명보다 낮은 숫자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동안 만성적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유럽국가들, 그중에서 프랑스의 경우 최근 출산율을 2.0명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저출산과 이를 동반하는 고령화 현상이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복지’ 실행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양한 정책들이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자녀 교육문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정책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베트남 부인과 금슬 좋은 노총각의 결혼이 그나마 기여한다고 할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 해지면서 오랫동안 단일민족주의를 유지해 오던 한국사회가 글로벌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장벽이 약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이동이 자유로와지면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 조화로우면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의 창출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다. 1980년 말 이후부터 국내에 유입된 다문화 인구가 현재 120만명이지만 2018년이면 400만명이 넘어 한국사회의 비중 있는 구성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1년 1월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5만 1,154명이지만 이들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69억 세계인구의 3.1%이다.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보여준 독일팀과 스페인팀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서 터키계 독일국가대표 메수트 외질(Mesut Ozil)의 활약은 독보적이었다. 독일축구 엔트리 23명 중 11명이 외국계 선수였다. 인종과 지역을 넘어선 화합의 결과라고 평가받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다문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는 다문화의 이해와 포용을 위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을까?

염혜수  
제42기 사법연수생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교육 수료



때는 2005년 어느 늦은 봄, 필자가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친구들과 거닐던 중, 어디선가 카메라를 든 사나이가 우리의 사진을 찍고는 다가와 자신은 모 대학생 잡지사에서 나왔는데, 사진을 봄 특집기사에 실어도 되겠냐고 정중히 요청해 왔다. 나는 남들보다 좀 눈에 띄었나 하는 으쓱하는 생각과 함께 흔쾌히 이를 수락하였다.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던 그해 여름, 중학교 친구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다. 내 사진이 실린 기사를 보았느냐고, 곧 이어 지인들의 그 기사에 대한 목격담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하나같이 “사진이 좀 …” 이라고 말끝을 흐리거나, 피식피식 웃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대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 하던 찰나 결국 그 문제의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필자는 얼굴을 다소 찡그린 채 고개를 뒤로 크게 젓히고 목젓이 보일세라 웃고 있었다. 생각 외로 너무 이상하게 나온 사진에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위 일화는 당시에 도 크게 대수롭게 생각지는 않았고, 필자의 기억 속에서 금세 잊혀졌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교육받으면서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물론 이는 애초에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한 사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 자신의 우스꽝스럽게 나온 사진이 공개된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기는 했다. 하물며 자신의 사진이 찍히는 것도 모른 채 그러한 매체를 접하게 됐을 때 당사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땠을지, 사뭇 이해가 갔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이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의 ‘정보’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축이 된 이상, 권력기관에 의한 언론통제는 무조건적으로 배척되어야 함은 헌법 제21조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다. 하지만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라야 함은 인류의 오랜 역사적 과오에 비추

어 보아도 자명한 일이나, 위와 같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춧돌로 자유와 힘을 얻게 된 언론이 과연 그 자유만큼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언론의 자유, 보도의 편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인격권 등이 필요불가결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대에서 일정 매체에 개인의 초상 및 사생활 등이 올라오는 것은 엄청난 과급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굴욕사진이나, XX녀, XX남 등 사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떠돌 때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 2위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다. 일부 악의적인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사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공개되는 등 피해가 재생산된다. 게다가 이는 일부 네티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언론에서의 무분별한 보도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양날의 칼이다. 언론의 막대한 과급력에 대한 권력기관의 견제 및 위협은 역사상 늘 있어왔던 일이며, 언론의 자유가 비로소 보장되려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언론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침해 사태를 순전히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인지, 혹은 단순히 기사 클릭수를 올리고 화제가 되기 위한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인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언론의 직접적인 보도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이 위와 같은 침해 사태를 예방하는 등의 노력 대신에 오히려 침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언론의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보도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 차원에서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만이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와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지 기자의 조건이 있다. ‘오전에 제출한 취재계획은 저녁 마감시간에 무조건 마감할 것’, ‘사건기사는 몇 분만에 작성 보고할 것’ 등 취재와 기사작성에서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취재 환경이 이렇다 보니 기사의 정확도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취재원의 취재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에 미온적인 자세 등이 이를 더욱 부추긴다. 결국 추측과 끼어맞추기식 기사 보도로 기자와 취재원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때 기자들은 피신청인의 자격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오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경험기’라는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고 며칠간 고민을 했다. ‘왜 나에게 원고청탁을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필자가 독특하게 경험했던 언론 분쟁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 나가기로 했다.

필자는 지방일간지 신문사에서 20여 년간 기자로 근무했다. 대부분 사회부에서 근무를 해 왔다. 그리고 사건 데스크, 지방부 데스크와 사회부 부장, 지방부 부장을 거쳤다. 이 부서는 취재원들과의 분쟁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그동안 인연을 맺게 됐다.

**필자는 이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당사자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지 직접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특이하게 피신청인이 아니라 신청인 자격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뒤 법정까지 확대되는 언론분쟁을 겪기도 했었다.

지난 2009년 필자는 그동안 다니던 회사로부터 신상에 대해 일방적인 불이익 인사발령을 통보받았다(추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되었음). 그리고 그 불이익 인사발령이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됐다. 필자는 이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당사자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지 직접 접하게 됐다. 보도된 내용으로 필자는 20여 년간의 공인으로서의 명예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받은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또 가까운 친인척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자괴감에 빠져 더 이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의해 인사에 대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만 답변을 할뿐이었다. 필자는 어떤 식으로라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했다. 이때 언론보도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은 언론중재위원회였다. 이런 심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필자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를 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과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 입장 바뀐 김기자



김창우  
인천일보 제2사회부장

무한 경쟁이라는 언론환경에 있는 기자들은 취재원의 명예 훼손,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산다. 특종을 노리는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오보, 과장 보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수습기자시절 선배들에게 배운 일명 일



언론중재위원회의 불성립결정으로 필자는 정정보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신문사와 민·형사상의 지루한 법적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필자는 1차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판결을 받은 뒤 신문사와의 근로관계를 회복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문사를 형사 고소하는 것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민사소송은 법정 다툼을 1년여 동안 지루하게 끌었다. 법정에서 주요 쟁점은 1. 당시의 보도내용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의 정정, 2. 현재에도 인터넷상 검색이 가능한 당시 보도내용의 삭제, 3. 보도 당시에 제작되어 언론재단에 보관되어 있는 PDF파일 중 일부 기사내용의 삭제 등 3가지 사안의 정정 여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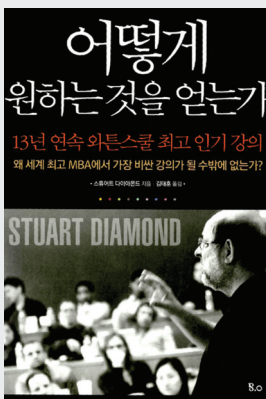
당시 재판부는 현재로써 PDF파일 중 기사 삭제는 판례가 없어 판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은 어렵다는 이유로 1, 3번 쟁점에 대한 정정에 대해서 필자에게 양보를 권했다. 수차례의 법정 심리 끝에 결국 필자와 신문사는 재판부의 조정으로 2항인 인터넷 검색만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됐다. 결국 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절반의 명예회복만 이루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전 직장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과 물질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서두에 언급한 언론환경에서 2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직업적 타성에 젖어 취재원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자기합리화를 시켰던 일들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됐다. 취재 및 보도 시 지켜야 할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오늘도 기사를 꼼꼼히 읽어 본다. 🍷

## BOOK 이달의 책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지음 | 8.0 | 40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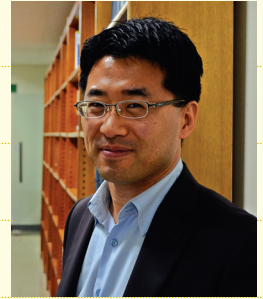
경쟁의 심화와 정보의 보편화로 현대인들의 삶은 점점 더 치열해져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협상의 순간을 맞이한다. 고객과의 거래, 성과평가와 연봉결정, 배우자 내지 아이들과의 의견충돌, 마트에서의 물건 구입 등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의사결정을 통해 무언가를 선택한다.

책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방법론을 전달하고 있다.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 것 외에 강의를 통해 배운 사실을 실제로 활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인간적인 소통, 표준과 프레임의 활용, 점진적인 접근법! 저자가 독자에게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비법을 넘어 그는 '협상에서는 자신의 말보다 상대방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자신이 전달한 의미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저자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문제 자체가 협상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90퍼센트 이상의 경우 사람과 절차가 협상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머릿속 그림을 그린다면,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대머리’는 나쁜 것이 아니다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지하철을 탔는데 한 중년의 남자가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런데 이 분, ‘대머리’시다. 게다가, 콧수염까지 기르셨다. 사극이나 나을 법한 독특한 의모를 가지신 이 분을 보면서 문득 얼마 전에 선고된 판결이 떠올랐다.

‘빠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상대방으로서 낙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도중 화감에 채팅창에다 ‘빠꺼, 대머리’라고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상고로 개시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로써 ‘대머리’의 명예훼손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사건은 사안 자체의 중요도나 사회적 과급력에 비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가십거리에 가까웠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에만 주목했다. 그런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이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보통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반사회적·반윤리적 행동이나 성향을 보인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라 평가받는 행위나 대상은 흔히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당사자의 의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나 인식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대머리’는 탈모로 인해 두피에 머리카락이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뿐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물론, ‘대머리’를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머리’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안겨주어 나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대머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극복되어야 할 편견일 뿐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본다면 ‘대머리=나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고 극복되어야 할 편견을 더욱 고착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간파했기 때문인지 2심 법원과는 달리 ‘대머리’라는 표현을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머리’라고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경위와 의도, 배경에 주목하여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 즉, ‘모욕’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과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맡게 된 2심 법원이 명예훼손 대신 모욕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것인가? 아마도 모욕죄 처벌 역시 어려울 것이다. 모욕죄 성립에서는 표현의 수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대머리’ ‘빠꺼’ 정도의 수위는 처벌하기에 다소 미흡하다. 좀 더 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걸 혼자만의 상상이지만, 피고인은 매우 치밀하고 이성적인 사람일 것 같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조차 수위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대머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사람의 생김새일 뿐이다. 🍷



#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이일환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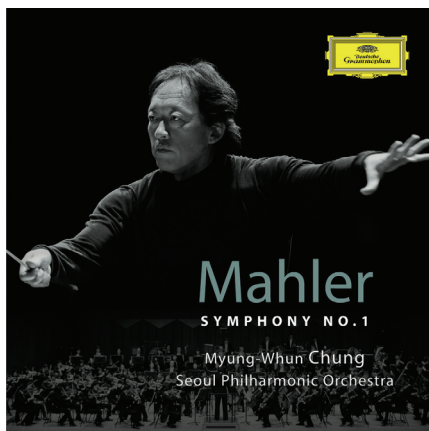
##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얼마 전 촉발된 서울시향의 음악감독 정명훈의 보수에 대한 논란은 삭감안을 받아들인 재계약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정명훈이 서울시향에 부임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공연을 찾을 때마다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향은 마치 스포츠처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명훈이었기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고려해보자. 서울시향과 정명훈의 만남은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맞아떨어진 감이 있다. 서울시향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마련했다한들 세계 정상급의 지휘자를 모시기는 쉽지 않다.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이어나가고 싶은 지휘자라면 클래식계 변방에 놓인 서울에 오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명훈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지휘자이지만 바스티유를 사임한 이후, 주요 오케스트라들의 하마평에 오른 적은 있지만 특별한 주목을 받진 못했다. 이걸 그의 실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세계음악계 내에서 그의 음악적 성격과 위상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와 동갑인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의 화려한 행보나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처럼 요즘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들을 생각하면 정명훈에게도 안정적인 포스트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향과의 만남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가 지휘하는 공연은 금세 매진되고 음악팬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도 받고 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정명훈의 보수가 아니다. 정명훈이 일류인가 삼류인가를 따지는 어이없고 유치한 질문은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명훈에 의한 서울시향이 지금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울시향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저 연주력이 좋아졌고, 유럽투어도 하고, 유명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나서고, DG에서 음반 나오고, 그 음반이 좋은 평가를 받으니 잘 되고 있다. 이제 5년, 10년이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발매된 서울시향의 말러 음반을 들으면서 어떤 가능성과 희의를 동시에 느꼈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기 전에 내지에 있는 사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홀에 선 서울시향의 사진을 보고서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 음반은 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실황인데, 왜 유럽 투어 중에 섰던 콘서트헤보우 홀의 사진이 실렸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맥락인지 짐작은 되지만, 그것이 보여주기에 과장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진 한 장을 보았을 뿐인데 우리에게 지금 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필요한가, 혹은 서울시향은 어떤 오케



스트라를 지향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그저 쉽고 편한 답을 들은 느낌이었다. 우리에게 진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필요한가? 여기에 말러 교향곡 1번 2악장, 도무지 춤곡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리듬감을 느낄 수 없는 란들러(Ländler)를 들으면서 '아아 이런 것들은 전통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닐거야. 과연 유럽의 오케스트라들처럼 체화된 전통을 가지지 않은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다 3악장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엔 '아니야 뭔가 될지도 몰라' 이런 기분으로 바뀌었다. 것처럼 그로테스크한 3악장은 유럽의 오케스트라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이 음반이 수많은 말러 교향곡 음반 가운데서도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명훈은 훌륭한 지휘자이고, 그와 함께 서울시향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혼자 힘으로 최상의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반사에서 음반 나오고, 유럽투어도 했으니 이제 서울시향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시향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서울시향만의 기준과 접근 방식을 모색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짜 낭비는 보수가 아니라 정명훈이 국내에서 그저 관현악 지휘자로 썩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그의 본령은 오페라에 있지 않던가. 🍷

# COMMISSIONERS



## 학교폭력 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 개최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1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인간성회복을 위한 폭력 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권 위원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이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태의 근절을 촉구했다.

## 중앙일보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고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육대 총장)은 중앙일보 1월 14일자에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위원은 학교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컷뉴스 인터뷰 '나눔문화 정착 위해 주력할 것'



**김형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으로 노컷뉴스와 인터뷰했다. 김 위원은 자유롭고 당당한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기부에 대한 대전시민의 개방적인 자세와 관심을 당부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3일에 실렸다.

## 경기법조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 판결평석 게재



**김재환 위원**(경기중재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연간회보 경기법조 18호에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평석을 게재했다. 판결평석의 내용은 민법746조의 본문 적용요건 및 효과, 불법성비교론,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민신문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기고



**류석호 위원**(경기중재부, 前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은 농민신문 1월 9일자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했다. 류 위원은 도시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도시농업'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시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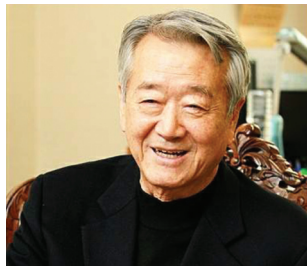
## 연말 이웃나눔 실천



**이택수 위원**(강원중재부, 강원지방법원 변호사회 회장)은 연말 이웃나눔에 동참했다. 이 위원은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50만원, 한국법무보호공단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 오마이스타 인터뷰



권성 위원장은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인터넷신문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했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이웃나눔과 사회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는 1월 23일에 실렸다.

### 사법연수생 실무수습교육 실시



위원회는 1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제42기 사법연수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생들은 언론조정중재 및 기사심의 실습, 조정사례 토론, 중재위원과의 대화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 중고생 대상 인턴십, 서울 외 지역까지 확대 실시



위원회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울 외에 1월 17일 광주, 1월 18일 부산, 1월 31일 대구, 2월 1일 대전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권 보호에 대한 이해, 언론분쟁 사례 및 해결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심리실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 학생은 인턴십 과정을 마친 후에 이수증을 받았다.

(좌측부터 광주, 부산, 서울)

### 이수중 총무팀장, 박사학위 취득



이수중 총무팀장은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헌법 전공)을 수료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내용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심사를 통과했다. 학위수여식은 2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 2012년 해외통신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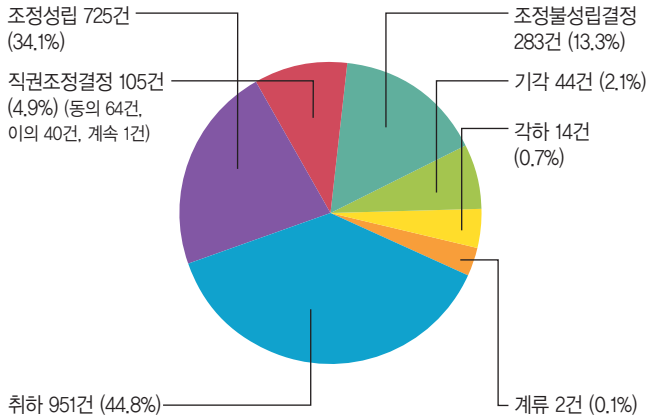
위원회는 2012년에 계간지 「언론중재」를 통해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동향을 소개할 해외통신원으로 영국 런던대 Goldsmiths College에 재학 중인 송동현 씨(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를 선발했다.

# 2011년도 조정중재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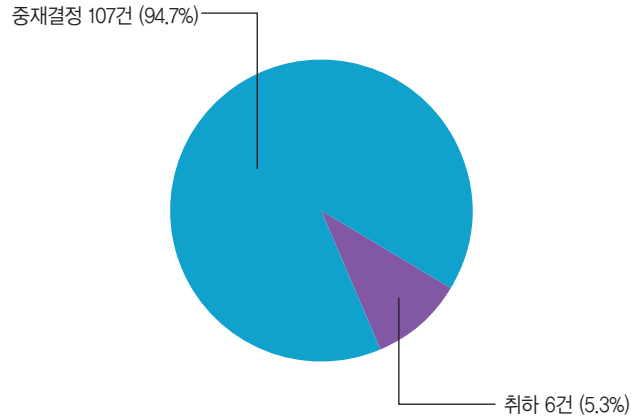
## 2011년 한 해 조정 2,124건, 중재 113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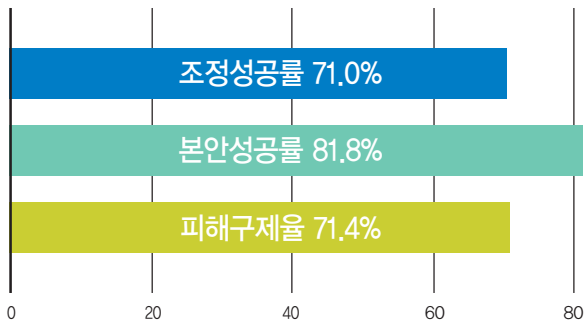
### 조정사건 처리결과 (총 2,124건)



### 중재사건 처리결과 (총 113건)



### 성공 및 피해구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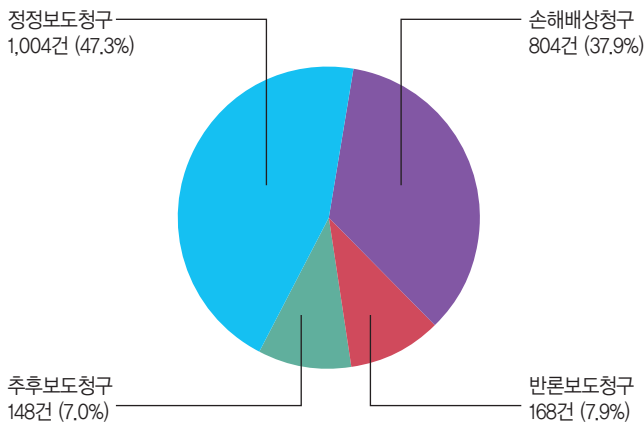
$$\text{※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text{※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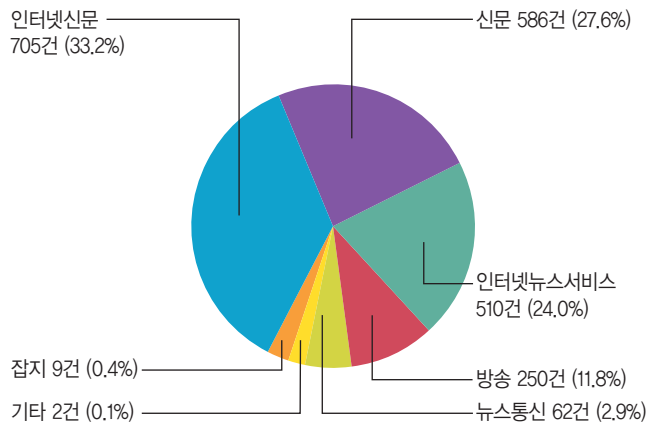
$$\text{※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계속+기각+각하+계류)}}$$

\* 신청접수 후 심판정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 청구유형별 신청건수 (총 2,124건)



### 매체유형별 신청건수 (총 2,124건)



#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The screenshot shows the Eye-Net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전자심리안내', '전자제출', '전자민원', '전자송달', '나의전자심리', and '사건검색'. Below the navigation is a login section with fields for '아이디' and '비밀번호', and a 'LOGIN' button. There are also options for 'ID 저장' and '인증서로그인'. A central banner features a photo of people in a meeting and the text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Eye-Net'. Below the banner are three main service buttons: '전자 심리상담', '전자 조정신청', and '전자 중재신청'. To the right is a '사건검색' section with dropdown menus for '연도선택' and '처리결과 = 선택 =', and a '검색' button.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section with a list of notices and a '열린 위원회' section with links to '시간검색', 'FAQ', '물고담하기', and '각종서식안내'.

##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